

제1항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13조(이용대상)

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 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
1.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(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-5등급, 인지지원등급)
2.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
3.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
4.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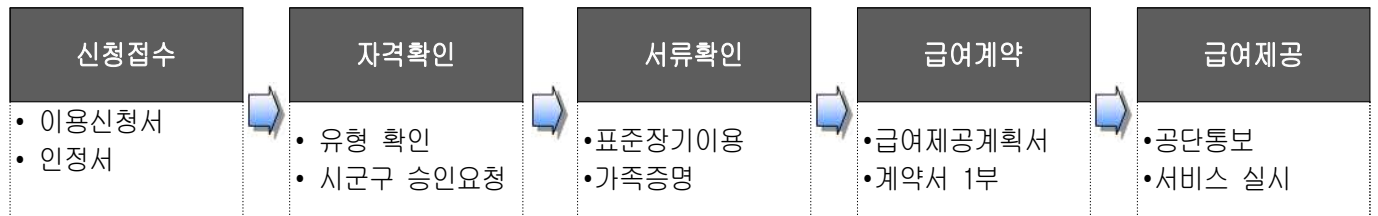
제14조(이용정원, 이용절차 및 모집방법)

1. 센터의 이용정원은 다음과 같다.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① 주간보호 : 46명
- ② 방문요양 : 정원 없음

2.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


3. (이용자 모집방법)

모집방법은 온라인,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급여종류를 홍보한다.

이용자	홍보방법
온라인	공단사이트등록, 블로그, 밴드 등
오프라인	홍보지(리플렛) 및 관계센터 연계 협력 등
기타	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, 직접홍보

- ① 관할지역 등의 장기요양기관(시설, 재가)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.
- ② 공단사이트 블로그, 밴드 등을 이용한다.
- ③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주간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.
- ④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.
- 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등에 홍보지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.
- ⑥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센터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